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이정문·조 국·이연희

김영배 · 복기왕 · 이학영

박 정・김원이・홍기원

조승래 • 어기구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 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 원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 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 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 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법률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 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 ③ 제2항제3호의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 선순위의 결정기준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독 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
	승)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②
사람(이하"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u>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u>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ㆍ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u>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u>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
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u>녀 1명</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
	여 지정한 손자녀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
	<u>장 낮은 손자녀</u>
	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u>주로 부양한 손자녀</u>
<u> <신 설></u>	③ 제2항제3호의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 선순위의
	결정기준 및 취업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 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 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 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 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 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 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 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까지의</u>
,